

# 법무뉴스

## 코로나19 대응 상황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107
공공누리	2유형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 2110-4076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 이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참조>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hwp [바로보기](#)

### 목록

이전글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확인

